

<데이터 3법> 마침내 국회 통과, 다가올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변화

① 개인정보 보호법

법체계, 감독기관의 변화

<개인정보보호법> 적용 + <개인정보보호위원회> 감독

법체계 변화	기존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을 <개인정보보호법>으로 이관
감독기관 변화	기존 행안부와 방통위역할을 <개인정보보호위원회>로 이관
적용대상 변화	<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> 적용법을 <개인정보보호법>으로, 감독기관을 <개인정보보호위원회>로 일원화
전문기관 변화	<정보집합물> 결합을 수행할 <데이터전문기관> 신설

<각 분야별 전문기관> + KISA 비식별 조치 지원센터 운영

	소관부처	지정	전문기관
공공	 행정안전부	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	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
통신	 방송통신위원회	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	
통신 및 기타	 과학기술정보통신부	 NIA 한국정보화진흥원	
금융회사	 금융위원회	 금융보안원	 한국신용정보원 Korea Credit Information Services
보건복지	 보건복지부	 SSIS 사회보장정보원	
교육	 교육부	 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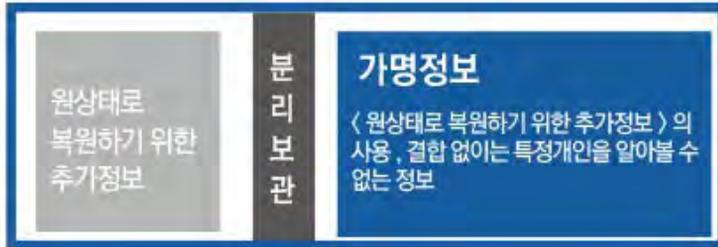
< 개인정보보호법 > 개정안의

가명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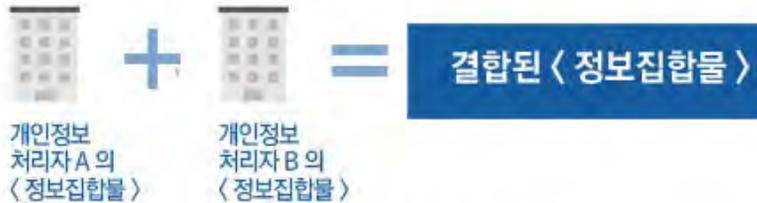
결합된 정보집합물

활용 vs 보호규정

개인정보를
<가명조치>하여
<원상태로 복원하기
위한 추가정보>와
<가명정보>로 분리



<데이터전문기관>은
다른 개인정보처리자
로부터
<정보집합물>을
제공받아서
결합할 수 있음



(정보집합물의 개념)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처리할 목적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구성되거나 배열된 둘 이상의 정보들을 말한다.

< 통계작성 > < 과학적연구 > < 공익적 기록보존 > 목적에 한하여

가명정보 동의 없이 활용

-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활용, 3자제공가능
- 동의받은 보유기간 종료후 파기 의무 없음
- 정보주체에게 영업양도시 고지, 유출시 통지의무 없음
-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열람권 정정삭제요청권 처리정지요구권 없음
- 원래 개인정보수집목적에 <가명조치>가 없어도 가능

* 신용정보법의 경우 통계 작성(상업적 목적 포함), 연구(산업적 목적 포함),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없이 활용 가능

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

가명정보

결합된 정보집합물

보호규정

	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규정	위반시 처벌
가명정보 재식별 및 정보집합물 오남용	<특정 개인>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<가명 정보>나 <정보 집합물>을 처리한 <개인정보 처리자>	4억원 이하 또는 전체 매출액의 3% 이하의 과징금 중 큰 금액
	<정보집합물>을 허가없이 <결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자>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<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집합물을 제공받은 자>	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	<특정 개인>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<가명 정보>나 <정보 집합물>을 처리한 자	
추가정보 유출	<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>를 하지 않아 <복원을 하기 위한 추가 정보>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	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보호조치	<정보집합물>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 이용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회수·파기하지 아니한 자	
기록작성	<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>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 관리하는 등 해당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<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>를 하지 않은 경우	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	<가명정보> 처리 및 <정보집합물>을 결합 또는 처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	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일부 수정될 수 있음

* 이하 내용은 국회법사원등후속입법절차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 있음

개인정보보호법 해당규정 원문보기

조	내용	
2 조 개인정보	1. "개인정보"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	가.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
		나. 해당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(이 경우,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, 비용,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)
		다. 가 or 나를 1 의 2 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· 결합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(이하 < 가명정보 > 라 한다)
1 의 2. "가명처리"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.		
8. < 과학적 연구 > _ 기술개발과 실증, 기초연구, 응용연구,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함		
28 조의 2 (가명정보의 처리 등)	<p>① 개인정보처리자는 < 통계작성 > < 과학적 연구 > < 공익적 기록보존 >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< 가명정보 > 를 처리할 수 있다.</p> <p>② 개인정보처리자는 ①에 따라 < 가명정보 > 3 자제공시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	
28 조의 3 (정보집합물의 결합)	<p>① (제 28 조의 2 에도 불구하고) < 통계작성 >, < 과학적 연구 >, < 공익적 기록보존 > 등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자간 < 정보집합물의 결합 > 은 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) 보안시설을 갖춘 < 전문기관 > 이 수행한다.</p> <p>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< 결합된 정보집합물 > 을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< 가명정보 > or < 익명정보 > 로 처리한 뒤 < 전문기관 > 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③ ①에 따른 결합절차와 방법, < 전문기관 > 의 지정권자,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, 절차, 관리감독, ②에 따른 반출 및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
28 조의 4 (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)	<p>① 개인정보처리자는 < 가명정보 > 처리시나 < 정보집합물 결합 > 수행시 <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 > 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 · 관리하는 등 해당정보가 분실 · 도난 · 유출 · 위조 ·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·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개인정보처리자는 < 가명정보 > 처리, < 정보집합물 결합 >, < 결합된 정보집합물 > 처리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 위반시 28 조의 6 적용 6 의 2, 제 28 조의 4 제 2 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</p>	
28 조의 5 (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)	<p>①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< 가명정보 > or < 결합된 정보집합물 > 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. 위반시 28 조의 6 적용 보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 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 억원 이하 또는 자본금의 100 분의 3 중 큰 금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</p> <p>② 개인정보처리자는 < 가명정보 > or < 결합된 정보집합물 > 처리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시 즉시 처리를 중지하고, 지체 없이 회수 · 파기하여야 한다. 위반시 28 조의 6 적용 4 의 4, 제 28 조의 5 제 2 항을 위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회수 · 파기하지 아니한 자</p>	

(주)소만사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knk 디지털타워 9층

TEL 02-2636-8300 | FAX 02-2636-8181

제품문의: sales@somansa.com

copyright (C) 1997-2020 SOMANSA ALL RIGHTS RESERVED.